

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-96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(회선설비 미보유)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0. 23.

서울전파관리소장

기간통신(회선설비 미보유)사업자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사전통지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 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
2. 당사자 : “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사전통지 내역” 참조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“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사전통지 내역” 참조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“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사전통지 내역” 참조
5.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
 -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(검사·보고 등) 제1항, 제92조(시정명령 등) 제1항, 제104조(과태료) 제5항 제17호
 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 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,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, 제22조(의견청취), 제23조(처분의 이유 제시), 제27조(의견제출), 제27조의2(제출 의견의 반영 등)
6. 제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7. 의견제출기한 : 2026. 11. 11.
8. 의견 제출처
 - 부서명 :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 행정처분담당
(☎: 02-2680-1752, Fax: 02-2680-1758, e-mail: ak9205@korea.kr)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-43 (궁동)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
8. 의견제출시 유의사항
 -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 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 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% 범위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,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50% 범위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니 해당 증빙자료를 의견제출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 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〈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) 사전통지 내역 〉

기간통신사업 등록번호	사업자명 (당사자)	법인 등록번호	대표자	사업장 주소	위반내용(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)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제1-01-19-001 1호	주식회사 원텔레콤	110111- ***5193	박*규	(18479) 서울 특별시 영등포 구 시흥대로 589-8, *** (07448) 서울 특별시 영등포 구 디지털로 38길 20-*** (대림동)	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○ 시정명령 내용 : - 연간매출액 현황 조사 자료와 선납비용 총액조사 자료를 '26.9.11.(금)까지 시정명령 이행 조치 결과와 함께 제출할 것 - 선불통화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(갱신)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신청하거나, 선불통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으려면 선불통화 서비스 해지 신청을 '26.9.11.(금)까지 완료하고 시정명령 이행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변경된 사업장 주소로의 기간통신사업 변경 등록 신청을 '26.9.11.(금)까지 완료하고 시정명령 이행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- 앞으로 등록기간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기간통신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성실히 응할 것 등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준수할 것 ※ 제출방법 : 문서24,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	과태료 350만원 (의견제출기한까지 납부서에 따른 자진납부시 280만원)